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2034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룡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5275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808,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1] 및 제4행의 “업무대행수수료”를 “2010. 5. 17.까지의 업무대행수수료 217,425,533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2~3행의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3. 7. 14.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89,501,000원”을 “2013. 7. 14.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82,800,000원 및 대여금 6,701,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및 제15행, 제5면의 [표2]의 “J”를 “M”로 각 고쳐 쓴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제3채무자의 성명이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에는 성명이 “M”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의 기재에 따라 “M”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 “K”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가 수령한 금원

피고는 ① N로부터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매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합계 341,000,000원(= 11,000,000원 × 31개월)을 지급받았고, ② D로부터 2016. 12.경 293,779,388원을, M로부터 2017. 1. 16.경 10,140,000원을, I로부터 2017. 1. 16.경 7,800,000원 및 같은 해 3. 14.경 11,700,000원을, E로부터 2018. 4. 5.경 58,000,000원을 각 추심하였으며, ③ 원고로부터 2017. 12. 28.경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¹⁾ 원,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업무대행수수료를 총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고, 2015. 6. 15. 이후의 업무대행수수료를 기존의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2017. 8.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수수료는 총 3억 9,650만 원(= 2015. 6. 15. 이전의 업무대행수수료 3억 7,000만 원 + 2015. 6. 15.부터 2017. 8. 31.까지의 업무대행수수료 2,650만 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N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억 4,1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D, I, M, E(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432,808,429원을 추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세무조정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업무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차액인 412,308,429원(= 3억 4,100만 원 + 432,808,429원 + 5,500만 원 - 3억 9,65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349,808,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K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갈음하여 N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취지이며,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업무대행수수료를 3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한다거나 피고의 D 등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 피고는 2015. 6. 15. 이후의 업무대행수수료를 기존의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N로부터 지급받은 돈, D 등으로부터 추심한 돈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정당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하에서는, ① 피고가 N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D 등으로부터 추심한 돈,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돈이 각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다.가. 피고가 N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D 등으로부터 추심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① 피고는 N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변제 명목으로 N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100만 원 등 총 3억 4,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10. 5. 17.까지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217,425,533원 및 위 돈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5.자 2010차48461 결정, 이하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상의 지연손해금(이율 연 20%)과 독촉절차비용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D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대료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D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피고는 위 각 추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D로부터 2016. 12.경 293,779,388원을, M로부터 2017. 1. 16.경 10,140,000원을, I로부터 2017. 1. 16.경 7,800,000원 및 같은 해 3. 14.경 11,700,000원을, E으로부터 2018. 4. 5.경 58,000,000원을 각 추심하여 D 등으로부터 합계 381,419,388원을 추심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합계 432,808,429원을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381,419,388원을 초과하여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1, 26 내지 32, 35호증, 을 제9,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3억 7,000만 원의 범위로 정산 내지 감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부분 및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K에 대한 추심금 채권만을 피고가 포기하고 이에 갈음하여 피고가 N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이며,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이나 D 등에 대한 추심금 채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은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0. 5. 17.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217,425,533원을 미지급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제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2013. 7. 14.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82,800,000원 역시 미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미지급 업무대행수수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자 2014차65545 결정, 이하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역시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1 지급명령과 제2 지급명령 사이의 기간, 즉 2010. 5. 18.부터 2013. 7. 13.까지의 기간은 37개월 남짓임이 역수상 명백하며, 위 기간 동안의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은 최소한 3억 7,000만 원(= 1,000만 원 × 37개월)의 범위에서 성립하였을 것이므로, 피고가 액면금 3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K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대료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기초하여 K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제1 지급명령과 제2 지급명령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위 3억 7,000만 원 남짓의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제1 지급명령은 2010. 5. 17.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2010. 5. 18.부터 2013. 7. 13.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제2 지급명령은 2013. 7. 14.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을 각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제1 지급명령 상의 업무대행수수료 채권(2010. 5. 17.까지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제1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2011. 3. 22.경 작성된 것으로, 제1 지급명령 상의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그 이후인 2010. 5. 18.부터 발생한 채권을 액면금의 범위에서 변제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인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N로부터 총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제1 지급명령과 제2 지급명령 사이의 기간(2010. 5. 18.부터 2013. 7. 13.까지) 동안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액(3억 7,000만 원 남짓)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위 2010. 5. 18.부터 2013. 7. 13.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및 그 변제를 위한 K에 대한 추심금 채권만을 포기하고 N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고가 위 기간 이외에 제1, 2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5.

17.까지' 및 '2013. 7. 14.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300,225,533원(= 217,425,533원 + 82,800,000원)까지 추가로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특히 위 '2010. 5. 17.까지'의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던바, 이처럼 피고가 변제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결과 그 변제가 임박한 상태에 있던

다액의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실제로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가 합의 성립 즉시 K에 대한 추심금 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별도로 진행 중이던 D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또는

확정된 판결에 기한 I, M, E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피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였으며(만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피고의 추심금

채권 소멸을 주장하며 승계참가 또는 독립당사자참가 등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피고에게 소

취하를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D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합의 제4항에서는 '3억 7,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 N, K에 대하여

어떠한 금액의 청구 또는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가) 내지 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K에 대한 추심명령에 의하여 담보가 되었던 범위, 즉 제1 지급명령과 제2

지급명령 사이의 기간(2010. 5. 18.부터 2013. 7. 13.까지) 동안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오히려 이 사건 합의 제7항에서는 '원, 피고 및 N는 이 사건 합의 성립 사실과 그 내용을 K를

제외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는 K

이외에 D 등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발송한 '채무 정산(상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이라 한다)의 본문 및 첨부문서(채권/채무 정산내역서) 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발생 내역에는 제1 지급명령 상의 업무대행수수료 채권(2010. 5. 7.까지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N로부터 지급받을 3억 7,000만 원의 채권 및 제2 지급명령 상의 업무대행수수료 원리금 채권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 잔액을 정산함에 있어 피고가 D로부터 추심한 돈 중 일부(추심금 총 293,779,388원에서 지연이자, 부가가치세, 비용 등 명목의 돈 합계 117,349,033원을 제외한 176,430,355원)를 공제하는 내용이 위 첨부문서(채권/채무 정산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제1 지급명령 상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소송까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반면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 발송 당시까지 그 집행을 위한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등이 발령된 바 없다), ② 만일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2015. 6. 15. 이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라면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 역시 채권 발생 내역에 포함될 수 없는데 피고는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채권 발생 내역에 포함시킨 점, ③ 이 사건 공문은 원, 피고 사이에 미지급 업무대행수수료의 정산 및 변제에 관한 합의가 계속되던 중 피고의 직원이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위와 같이 D로부터 추심한 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채권 잔액을 정산한 것은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피고 측의 협상안 내지 정산방안을 잠정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산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성립하지 못한 점, ④ D 이외에 I, M, E에 대한 추심금 채권은 채권 잔액을 정산함에 있어 공제되지 않은 점, ⑤ 피고는 이후 2019. 12. 1. 원고에게 업무대행수수료 정산에 관한 공문(을 제9호증)을 다시 보낼 때에는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과 달리 제1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 내역(청구 내역)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사) 피고가 2018. 5. 14.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8328호)을 받았다가 2019. 9. 10.경 위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을 제출하였고, 이후 2020. 2.경 P이 공탁한 돈 123,353,508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실제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 발송 당시에는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명백히 기재하는 등 2015. 6. 15.자 이 사건 합의 당시는 물론이고 적어도 위 2017. 10. 23.경까지는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2017. 12. 28.자 합의서 초안(갑 제7호증)의 첨부문서(채권/채무 정산내역서)에는 피고의 채권 내역에서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이 제외되어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애당초 원고의 이러한 요청 내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18. 5. 14.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P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후 2019. 9. 10.경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집행절차에서 교부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그 무렵 원고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원고의 세무업무를 계속 대행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는 적어도 2021년 5월경까지는 원고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 당시부터 제1, 2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위 2019. 9. 10.경 제2 지급명령 상의 채권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사후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가 D 등으로부터 추심한 합계 381,419,388원은 2010. 5. 17.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의 일부로서, N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억 4,100만 원은 2010. 5. 18.부터 2013. 7. 13.까지 발생한 업무대행수수료 채권의 일부로서 각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각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500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¹⁾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무조정용역(원고가 납부할 국세를 감액시켜주는 용역)의 수수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지급된 것이며, 이후 실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② 설령 위 5,500만 원이 기존에 성립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 피고는 2015. 6. 15. 구두 합의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에 위 돈은 정당한 채권의 범위를 넘어서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2017. 12. 28.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에게 세무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5,500만 원은 2017. 12. 28.에, 나머지 5,500만 원은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원고의 체납국세 감액절차가 완료되어 국세청으로부터 감액통보를 받거나 감액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7호증)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국세를 감액시켜주기로 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합의서 및 그 첨부문서(채권/채무 정산내역서)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존 업무대행수수료 채무액을 임의로 1억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5,500만 원을 2017. 12. 28.에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원고의 국세 감액 이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7. 12. 28. 지급된 5,500만 원은

기존 업무대행수수료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매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의 본문 및 첨부문서(채권/채무 정산내역서) 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발생 내역에는 2014. 10. 14.부터 2017. 8. 31.까지의 채권액이 2,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원, 피고 사이의 약정 업무대행수수료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017. 10. 23.자 공문의 본문에 기재된 '채권액'은 그 계산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첨부문서(채권/채무 정산내역서)에는 동일한 금액이 채권의 '청구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위 '채권액'이 실제 발생한 채권 전체의 액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피고가 잠정적으로 일부 청구한 채권의 액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의 실제 지급 능력을 감안하여 협상 과정에서 채권 중 일부만을 우선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위 공문 작성일 무렵까지 피고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선불리 배척할 수 없다), ③ 원, 피고는 2013. 11. 14. 및 2018. 12. 1. 업무대행수수료의 액수를 변경하는 합의를 할 때에는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3)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2015. 6. 15. 업무대행수수료 변경 시에만 유독 구두로 합의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수수료 월 100만 원은 기존 업무대행수수료인 월 600만 원의 1/6에 해당하는 돈으로 위 2015. 6. 15. 무렵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1/6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2018. 12. 1. 업무대행수수료가 월 220만 원으로 변경될 시점에 피고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원, 피고가 2015. 6. 15. 업무대행수수료를 월 1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5,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돈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김봉원, 판사 최승원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22. 11. 15.자 준비서면(제9면 이하)을 통하여 주장을 최종 정리하였다.